

# 전문齒科醫제도 施行 立法예고에 즈음하여

李 種 昕

大韓齒科醫師協會  
學術擔當副會長

치의학이 신학문으로 이땅에 들어온지 1세기가 가까와 오고있으며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 치의학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발전에 부응하여 전문치과의제도가 입안된지 벌써 30여년이 지나고 있으나 그동안 어려운 시대적상황과 경제적 여건이 이 제도의 실시에는 큰장벽으로 가로놓여 있었다.

이미 국제적으로 전문치과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30여개국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실시로 인해 치의학은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어온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현실은 62년 제도입안이후 이렇다할 진전없이 담보상태로 실시가 보류됨으로 인해 치의학의 발달이 의학에 비해 현격하게 낙후된 상태로 있게 되었다.

전문치과의제도가 실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치과의사의 사회적 지위의 약화와 학문적 낙후성은 역으로 발전하는 의학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많은 치의학 분야가 침식되어, 영역의 위축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 전문치과의 교육제도의 미비로 발전하는 세계적 추세를 맞추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상태로 전문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치과계의 실정인 것이다.

이 전문치과의제도를 마련하는데 까지의 경위를 요약해 보면 62년에 실시하려다가 보류한 이 제도를 73년 4월 제2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1천불이상이 될때까지 무기연기기로 결의했다.

그러던중 82년 2월 16일 보사부에서 전문치과의제도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폐기하겠다는 의견조회가 있어 동년 4월 제31차 대의원총회에서 제도의 실시를 전제로 연구위원회의 구성이 의결,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88년 현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보사부로부터 재차 실행되지 않은 법령에 대한 정비조회가 있었다.

이에따라 현집행부는 전문치과의제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치과의 시험시행위원회를 수차례 걸쳐 개최하는 한편 보사부와 협의하여 89년 12월 30일 입법예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무릇 모든 제도가 실시되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게 마련이다.

현집행부는 우선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이를 실시할때에는 개원가가 불이익을 받지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야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도가 실시되려면 많은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될 점은 법이란 폐기하기는 쉬우나 만들기는 쉽지않다는 것이다.

다른 단체역시 전문의제도를 실시하려고 노력중인 현상황에서 우리는 우선 이번 기회에 관계시행규칙을 마련, 제도시행의 기틀을 구비했다는데 큰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치협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회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과제가 남았다고 하겠다

